

「하나 바이오인증 서비스」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생략>	제1조 <좌동>	
제2조 용어의 정의 <p>① ~ ⑧<생략> ⑨ "공항연계 서비스"란 국내선 탑승 수속시, 바이오정보와 개인정보(성명 및 휴대폰번호, 이하 "공항연계정보"라 합니다)를 입력하여 본인 여부를 인증하는 서비스로,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이하 "참가기관"이라 합니다), 한국공항공사 산하 국내 공항(이하 "국내 공항"이라 합니다)이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제2조 용어의 정의 <p>① ~ ⑧<좌동> ⑨ "공항연계 서비스"란 국내선 탑승 수속시, 바이오정보와 개인정보(성명 및 휴대폰번호,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앱을 이용하여 수취한 체크인 정보를 말합니다. 이하 "공항연계정보"라 합니다)를 입력하여 본인 여부를 인증하는 서비스로,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이하 "참가기관"이라 합니다), 한국공항공사 산하 국내 공항(이하 "국내 공항"이라 합니다)이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바이오행공권 방식 추가
제3조 <생략>	제3조 <좌동>	
제4조 서비스 이용 제한 <p>① <생략> ② <생략> 1. 공항에서 제공한 바이오정보가 5회 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경우 2. <생략> ③이용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은행이 정한 서비스 신청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제3호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에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p>	제4조 서비스 이용 제한 <p>① <좌동> ② <좌동> 1. <삭제> 1. <좌동> ③이용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은행이 정한 서비스 신청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제3호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에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p>	공항 이용 제한 내용 변경에 따른 삭제

제5조 ~ 제12조 <생략>	제5조 ~ 제12조 <좌동>	
부 칙 1.~4. <생략>	부 칙 1.~5. <좌동> <u>6. 이 약관은 2025년 07월 01일부터 개정합니다.</u>	부칙 신설